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0
----------	------------

제출연월일 : 2001년 5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이 종전의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 조문을 보완하고
-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원활한 건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 운송사업지원 규정의 보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시의버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이 종전의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계속 감면하도록 함(제10조)

○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감면혜택이 없던 것을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제13조)
 - ※ 현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취·등록세 전액 면제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신설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 시행 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제28조의2)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기타 참고자료 : 별첨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시의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p>	<p>제10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의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p>	<p>제10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p> <p>-----</p> <p>-----</p> <p>-----</p> <p>-----</p> <p>-----</p> <p>-----</p> <p>-----</p>	<p>제10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p> <p>-----</p> <p>-----</p> <p>-----</p> <p>-----</p> <p>-----</p> <p>-----</p> <p>-----</p>	<p>제10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p> <p>-----</p> <p>-----</p> <p>-----</p> <p>-----</p> <p>-----</p> <p>-----</p> <p>-----</p>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p>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p>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p>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p>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p>

현행	개정안
<p>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유기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1.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건축한 경우(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p> <p>1.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p>

현행	개정안
<p>2.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p>	<p>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신설></p>	<p>제28조의2(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참 고 자 료

- 지방세법 (부분발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부분발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분발취)
- 임대주택법 (부분발취)
- 임대주택법시행령 (부분발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분발취)
- 행정자치부 감면조례개정 표준안 (사 본)

관련법규 부분발취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5조(면허 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버스자동차운송사업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제4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라 함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지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는 그 등록을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 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의 규모와 입주대상자 등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당해 임대주택의 매매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의외의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을 말한다.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행 정 자 치 부

우 110-760 / 서천시 중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 3703-5059 / 전송 (02) 3703-5552
 세 제 과 과 장 김 대 영 사무관 박창용 담당자 이 성 용 (leesy@mogaha.go.kr)

문서번호 세제 13400 - 515

시행일자 2001.3. 22. (3년)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세정담당과장

신	람	3월	지	
점	원자		시.	
수	시간	3. 22	결	
	번호	854	재	
	처리과	세정	공	
	담당자		람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전 · 월세안정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통보

1. 최근 전 · 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통령지시(2001.3.5. 및 3.13. 국무회의시)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전 · 월세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시기 바라며,

2. 세제 13400-242 (2001.2.5)호로 이미 통보한 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관련 감면조례개정도 동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으니, 금년도 종합토지세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특별(광역시)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1부(핸디오피스별송)
 2. ○○도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1부(핸디오피스별송).
 3.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전 · 월세 종합대책 1부(별송). 끝.

행 정 자 치 부 장



○○도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파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p>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p>

현행	개정(안)
<p><u>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u></p> <p>1. <u>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건축한 경우(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u></p> <p>2. <u>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u></p>	<p>1. <u>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u></p> <p>2. <u>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② <u>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u></p>

현행	개정(안)
<p>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p>	<p>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내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행 정 자 치 부

우 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 3703-5016 / 전송 02) 3703-5552
 세 제 과 과 장 김 대 영 사무관 박창용 담당자 이 성 용 (leesy@mogaha.go.kr)

문서번호 세제 13400-574

시행일자 2001.03.28 (5년)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세정담당과장

선 람	채무과장	38호	지	
접 수	일자	3.29	시	
	시간		결	
	번호	P10	재	
	처리과	세 정	공	
	담당자		람	
	심사자		심사일	

제 목 마을버스운송사업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홍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2000.8.2. 대통령령 제16934호) 으로 신설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각 시도에서는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의회 의견을 거쳐 시행하기 바랍니다.

- 첨 부 : 1. ○○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 1부(핸디오피스 별송).
 2. ○○도세감면조례중개정안 1부(핸디오피스 별송). 곶.

행 정 자 치 부 장

전길 세제과장

7/2 19 97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 본문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에”를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u> 시내버스운송사업 ·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u>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p>	<p>제10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 ----- <u> 시내버스운송사업 · 마을버스운송사업 ·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u>에----- ----- ----- ----- ----- -----</p>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행정자치부

우 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02) 3703-5058 /전송 02) 3703-5552
세 제 과 과 장 김 대 영 담 당 박 창 용 담당자 성 문 옥

문서번호 세제 13400-648

시행일자 2001.04.02 (10년)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지방세담당과장

선 람	재 무 과 장	38호	지	
접	일자	2001. 4. 04	시	
	시간		결	세정금
수	번호	146P	재	아C영S
	처리과	미정	공	
담	담 당 자		람	금강구 이상근
심	심 사 자		심	심사일

제 목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 허가

1. 충남 세정 13400-501('01.3.13.), 충북 재무 13400-735('01.3.15.), 충남 연 기군 재무13400-523('01.3.12.), 충북 청원군 재무13400-1079('01.3.16.)와 관련입니다.
2.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및 컨테이너내륙기지에대한 충청남도도세·충청북도도 세·충청남도연기군세·충청북도청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규 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허가하니,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불 임 : 1.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충청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3. 충청남도연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4. 충청북도청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행정자치부장

전결 세제과장

7월 14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